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9
----------	------

제출년월일 : 2005.11.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개선 및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대부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운용취지에 맞게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가구의 생계자금을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의 용도로 변경함
(안 제3조제1호)
- 나.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함
(안 제4조제2항)
- 다. 융자금 대부이율 변경 (안 제5조)
 - 융자이율을 연5%에서 연3%로 낮추어 융자받은 가구의 부담을 완화함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 나.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기금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제1항 및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높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

제4조의 제목중 “위원회”를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부구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을 “(융자한도 및 이율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5%”를 “3%”로 한다.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이하로 하되,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8조중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기금과 생계자 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을 위한 용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삭 ----- 제> ----- ----- 운용 ----- -----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 각호에 -----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용자대상) ①저소득주민생활안정 기금(이하 "안정기금"이라 한다)의 용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 의욕이 높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제3조(용자대상) ①기금----- ----- <삭 제> ----- ----- 어느 하나 ----- -----		
1.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1.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 한 자금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기타 <u>구청장</u>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4. ---- <u>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제4조(<u>위원회</u> 설치) ① (생략)	제4조(<u>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u> 설치)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구청장</u> 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①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② ---- <u>행정관리국장</u> ----
제5조(<u>융자한도·융자금 대부기간 및 이율</u> 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이하로 하되 <u>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u> 거치 2년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5조(<u>융자한도 및 이율</u> 등)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한다.	① ---- <u>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u> ----
제9조(<u>융자금의 상환</u>) 융자금의 상환은 <u>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균분 상환한다.</u>	② ---- <u>3%</u> ----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u>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u>	<삭제>
	제18조(준용) ----
	---- <u>「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u>